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25호

「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(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)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라.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마. 지원사업, 예방 교육 및 재정지원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바. 지도·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, 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붙임

[붙임 1]

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흥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.
2. “농업경영체”란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.
3. “농업작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.
4. “농업근로자”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농업작업 안전재해”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(이하 “안전재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6. “농업인안전보험”이란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

를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농업인
2. 농업경영체
3. 농업근로자
4. 무급 가족종사자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
2. 예방에 필요한 연구·조사 및 보급·지도에 관한 사항
3.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예방 지원사업)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
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·지도
2.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·홍보
 - 가.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
 - 나. 농업기계·장비 안전 사용 교육
 - 다.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
3.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
4.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5.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
6.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예방 교육)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, 작업환경개선, 농업기계 안전, 개인보호장비, 편이장비,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,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도·감독)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①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